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2015. 3. 10.



법무부

식순표 ■ PROGRAM

• 주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 세부 일정

개 회	
14:40~15:00 15:00~15:05	• 등록, 공청회 자료 배부 • 개회선언 • 인사말씀 : 봉 옥 법무부 법무실장
발표 및 토론	
사회 : 신희택 교수(서울대)	
15:05~15:10	• 패널 소개 신희택 교수(서울대)
15:10~15:40	• 주제발표 천경훈 교수(서울대) – 합작법무법인 관련 주요 쟁점 –
15:40~16:40	• 지정토론 정형근 교수(경희대) 양시경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이사) 이원조 외국법자문사(DLA Piper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병수 외국법자문사(Sheppard Mulli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신현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제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이형원 변호사(이국주, 이형원 공동법률 사무소) 이지은 변호사(PCA 생명보험)
16:40~17:00	• 자유토론
폐 회	

Contents

■ 주제발표 ■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 ————— 1
천 경 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성토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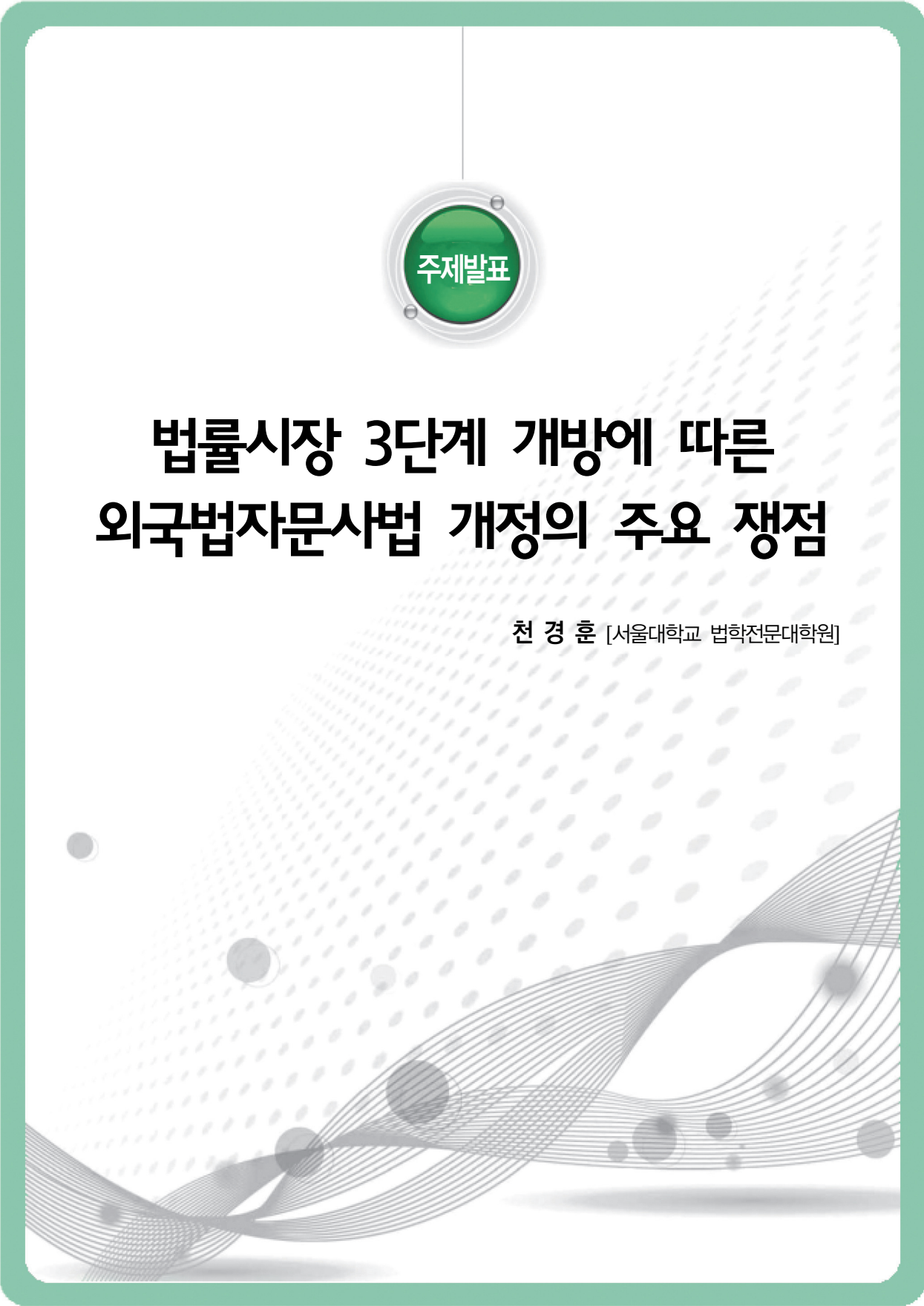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 27
정 형 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 35
양 시 경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 43
이 원 조 [DLA Piper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 병 수 [Sheppard Mulli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 51
신 현 식 [법무법인 세종]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 65
이 제 혁 [법무법인(유한) 세한]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 69
이 형 원 [이국주·이형원 공동법률사무소]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 75
이 지 은 [PCA 생명보험]



주제발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

천 경 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

천 경 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1. 법률시장 개방의 기본방향

한·EU 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은 “FTA”라고 약칭한다)이 발효됨에 따라 법률시장이 단계별로 개방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FTA는 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 설치, 국내외 로펌 간의 특정협력약정, 국내외 로펌 간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이어지는 3단계 개방을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시장의 개방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산업 자체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모·역사·전문성의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선진국, 특히 영미의 로펌이 국내에 제한 없이 진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한된 규모의 시장에서 개방으로 인해 국내외 로펌과 변호사들 간에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의 경쟁이 격화될 경우 법률서비스의 공익성·공공성을 해쳐 역

설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수익성 위주의 과도한 경쟁의 과정에서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변호사 윤리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률시장 개방정책은 위에서 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법률시장 개방은 우리 시장의 고유한 상황과 조화되면서 동시에 시장개방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 뿐만 아니라 한·호주, 한·중 FTA 등 더 넓은 범위의 시장개방도 염두에 두면서 그 추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다.

2. 법률시장 개방 현황과 입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간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하여 그 통상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이는 단계적 방식, 즉 협정 발효시 1단계 개방,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2단계 개방,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3단계 개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협정에 따라 1단계의 개방만을 약정한 경우도 있고, 2단계 또는 3단계의 개방을 약정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상협정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국가	약정 자유화 수준	진행상황	향후 일정
미국	3단계	1단계 (2012.3.15.) 2단계 (2014.3.15.)	2017.3.15. 3단계 개방 예정
EU	3단계	1단계 (2011.7.1.) 2단계 (2013.7.1.)	2016.7.1. 3단계 개방 예정
ASEAN ¹⁾	2단계	2단계 (2011.4.30.)	
페루	2단계	2단계 (2013.8.1.)	
인도	1단계	1단계 (2010.1.1.)	
EFTA ²⁾	1단계	1단계 (2006.9.1.)	

1) 동남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ern Nations)으로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임.

2)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으로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4개국임.

이 중 실제로 의미가 가장 큰 것은 미국 및 EU와의 협정에 따른 개방이다. 한미 FTA는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 예외가 되는 유보사항을 정하는 이른바 Negative 방식으로, 법률시장 개방 약속은 제11장(투자) 및 제12장(서비스)에 대한 미래유보인 부속서 II에 정해져 있다. 한EU FTA는 분야별로 개방 약속을 기재하는 이른바 Positive 방식으로, 법률시장 개방 약속은 사업서비스 중 전문직서비스의 하나로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한미 FTA의 단계별 법률시장 개방 약속은 유보안, 한EU FTA의 단계별 법률시장 개방 약속은 양허안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실제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들 협정에서 각 단계별 개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단계(협정 발효시)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 변호사에게 원자격국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자문을 허용하고, 외국 로펌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을 허용한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 로펌과의 동업이나 국내 변호사의 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1단계 개방을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 및 시행(2009.9.26.)되었다.

제2단계(협정 발효 후 2년 이내)는 이른바 특정협력약정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 간의 사안별 협력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공동사업이 허용되는 것은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한하며, 그런 사건에 관해서는 공동처리 및 수익분배를 허용한다. 여전히 이 단계에서도 외국 로펌 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의한 국내 변호사의 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단계 개방을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이 1차 개정되었다(2011.4.30.).

제3단계(협정 발효 후 5년 이내)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의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이제 EU에 대해서는 2016.7.1.까지, 미국에 대해서는 2017.3.15.까지, 제3단계 개방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법자문사법의 추가 개정을 통하여 제3단계 개방을 위한 국내 입법조치를 2016년 상반기까지는 마쳐야 한다. 이 개정법에서는 합작투자기

업의 설립요건,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 대한민국 변호사의 고용에 대한 요건 등 FTA가 예정하고 있는 규제 내지 제한요건을 명시해야 함은 물론, 법률시장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개정위원회의 활동

제3단계 개방에 대비한 입법을 준비하기 위하여 실무계 및 학계의 인사들이 참여한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였다. 총 13차의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선별하고, 선별된 쟁점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외국법자문사법 전반에 걸친 사항을 논의하는 하였으나, 주로 합작투자기업의 도입이라는 제3단계 개방에 관한 사항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하에서는 주요 쟁점 별로 위원회의 논의를 정리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크게 보아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에 관한 쟁점, 합작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쟁점, 합작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쟁점으로 대별하여 정리한다.

Ⅱ 합작투자기업의 설립 관련

[쟁점 1-1] 허가기관이 재량을 갖는 허가제로 할 것인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한 인가제(준칙주의)로 할 것인가?

한미 FTA 유보안 및 한EU FTA 양허안은 모두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설립에 관해 허

가기관이 완전한 자유재량을 가지는 특허제를 도입하는 것은 유보안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워 보이나,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일정한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설립을 인가하는 인가제의 도입은 유보안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허용된다.

아래에서 보는 다양한 쟁점들, 예컨대 합작주체 요건, 고용에 관한 요건, 의사결정 및 지분비율에 관한 요건, 업무범위에 관한 요건 등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입법으로 정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한 원칙적으로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로 입법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법무법인 등 국내 변호사의 조직형태에 적용되는 국내법과도 균형이 맞다.

[쟁점 1-2] 누구를 합작의 주체로 할 것인가? 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을 합작주체로 할 것인가, 각각의 구성원인 자연인들을 합작의 주체로 할 것인가?

한미 FTA 유보안 및 한EU FTA 양허안은 합작투자기업의 합작주체를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로펌의 파트너 또는 소속변호사인 개인, 국내 로펌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인 개인이 합작주체로서 직접 합작투자기업에 지분을 가지는 형태는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물론 국내 로펌 또는 외국 로펌이 지명한 자를 합작투자기업의 주주 또는 구성원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로펌이 합작주체가 되는 방안과 로펌이 지명한 자연인이 합작주체가 되는 방안 모두 입법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i) FTA 문언 자체가 합작주체를 로펌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ii) 그 취지는 우수한 선진 로펌의 노하우를 도입하여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데 있으므로 자연인이 합작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로펌 자체가 합작주체가 되는 것이 개방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점, (iii) 만약 자연인들이 합작주체가 된다면 그들이 원래 속한 로펌에서 이적할 때에 합작이 유지되는 것인지 종료되는 것인지 합작관계가 이전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iv) 자연인들을 합작주체로 하더라도 관리감독상으로는 외국 로펌 및 국내 로펌 자체에 관한 각종 규정

의 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나 집행의 실효성으로나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FTA가 명시적으로 예정하듯이 로펌들이 합작주체가 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입법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자연인들이 합작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입법을 마련한다면 해당 자연인이 소속 로펌을 옮길 때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A로펌이 지명한 甲과 B로펌이 지명한 乙이 합작투자기업 C를 구성했는데, 甲이 D로펌으로 소속을 옮긴 경우에 C의 존속 여부 및 지분 관계가 문제된다. 이런 경우에 D가 당연히 새로운 합작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C가 해산된다고 보는 것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법률 소비자들의 이익도 해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개인의 소속변경에도 불구하고 합작을 해소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A로펌과 B로펌의 합작투자기업으로서의 C를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려면, 甲의 의사와 상관없이 甲이 보유한 C 지분이 A로펌이 지명한 다른 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이전 또는 이전간주는 우리 법이 상정한 조합이나 법인의 일반 법리와는 매우 거리가 있고, 실질(로펌간 합작)과 형식(개인이 합작주체) 간의 괴리를 입법으로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억지스럽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자연인이 아니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정리되었다.

[쟁점 1-3] 로펌을 합작주체로 할 경우, 법인 형태의 로펌만을 합작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파트너십/조합 형태의 로펌도 합작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로펌들이 합작주체가 되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 주체들의 법적 형식에는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가 문제된다. 한미 FTA 유보안에서는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라 함은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General Partnership,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PC (professional corporation)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

로펌들이 모두 합작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General Partnership이나 LLP는 좁은 의미의 법인은 아니지만, 미국법은 물론 영국법 등 상당수 EU국가 법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권리능력, 소송능력 등이 인정되어 사실상 우리 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국내의 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에도 합작주체 적격을 인정할 것인지는 다소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우리 법상 이들 사무소는 권리능력이나 소송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점, 이런 형태의 사무소들의 체제 내 편입을 위하여 법무조합 제도가 신설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 합작주체로는 일단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만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국내법과 체계상 더 정합적일 것으로 보인다.

[쟁점 1-4] 합작투자기업의 조직형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호사법상 인정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준하여 인정할 것인가, 새로운 유형의 조직형태를 창설할 것인가?

이는 위 [쟁점 1-2]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현행 변호사법상 조직형태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모두 자연인인 변호사가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약 [쟁점 1-2]에서 국내외 로펌을 합작주체로 하는 방안을 택한다면 불가피하게 변호사법이 예정한 것과는 다른 조직형태를 입법으로 창설하여야 한다. 물론 그 대요는 기존 변호사법의 조직형태에 준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자연인이 아니라 로펌 그 자체가 합작주체가 됨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된다.

유보안에 따르면 합작투자기업이 반드시 법인격을 가진 법인 형태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3단계 개방의 초기에는 지배구조·운영·수익분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하여 규제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합작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 자치를 기본 운영원리로 하는 조합계약이 아니라 법인 형태를 요구하는 방안도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 법상 조합은 영미법, 싱가포르법 등의 파트너십과는 달리 권리능력, 소송능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미약하므로, 조합 형태의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실제 운영상 예기치 못한 난점이 무척 많이 발생할 수 있다.³⁾ 이 점을 고려하면, 아예 처음부터 법인 형태의 합작투자기업만을 인정하는 것이 향후 외국 로펌 측의 예기치 못한 불편이나 불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는 “**합작법무법인**”이라는 **유형의 조직형태를 새로이 창설**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합작법무법인은 외국 로펌과 한국 로펌이 구성원(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법무법인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하되 구성원이 자연인이 아니라 로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는 상당한 수정을 요하게 된다.

[쟁점 1-5] 합작투자기업의 합작주체들에게 어떤 요건을 부과할 것인가?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을 합작주체로 하는 경우, 각각의 업력과 규모 등에 관하여 어떤 자격 제한을 둘 것인가?

유보안/양허안에서는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라고만 하고 있다. 한미 FTA 유보안에서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에 대해 미합중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도 이에 준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외국 로펌 및 한국 로펌에 대해 일정한 업력 및 규모 등을 요구할 것인지 문제된다. 법률시장 개방의 취지가 선진법률서비스를 도입하여 법률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한국 법률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능력과 실체를 갖추고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없는 외국 로펌들만이 합작투자기업**

3) 예컨대 물건을 소유할 때에도 조합원들의 합유가 되고, 채무도 조합채무가 되며, 소송을 할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에 참여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목상으로만 합작투자기업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외국 로펌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하는 **국내 로펌도 급조된 곳이 아니라 최소한의 능력과 실체를 갖추고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없는 곳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i)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 (ii) 5년 이상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5인 이상일 것, (iii)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결정이 주사무소에서 이루어졌을 것, (iv) 당해 로펌 및 그 대표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또는 그에 준하는 해당국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국내 및 외국 합작주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쟁점 1-6]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합작주체의 의결권 또는 지분비율을 제한할 것인가?

유보안/양허안에 따르면 “합작투자기업을 허용하되 의결권 및 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단계 개방 이후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이 허용되면, 외국의 우수한 로펌들은 국내의 대형 로펌보다는 중소형 로펌을 그 합작 파트너로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쟁력 열위로 시장 개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로펌들이 외국 로펌과의 합작에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외국 로펌들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조정 등 합작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대형 로펌보다는 중소형 로펌을 택할 경우에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기 용이할 것이다. 또한 장래의 성장가능성이 확실치 않은 개방 초기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적합한 규모의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예상해 볼 때,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한 국내 로펌이 사실상 명의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합작투자기업이 사실상 외국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i) JLV가 파트너십으로 설립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이 QFLP가 아닌 경우에는, 그 외국 로펌의 지분파트너로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의 숫자가 JLV에 참여하는 싱가포르

로펌의 지분파트너 숫자보다 많아서는 안 되고, (ii) JLV가 회사로서 설립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이 QFLP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 로펌이 지명하는 이사의 수는 싱가포르 로펌이 지명하는 이사의 수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⁴⁾ 이는 결국 JLV가 외국 로펌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i)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제한** 하고,⁵⁾ (ii) **합작법무법인의 파트너급 외국법자문사의 수가 파트너급 변호사의 수보다 많을 수 없게 하고**, (iii) 의결권 행사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FTA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어도 개방 초기에는 오히려 개방 취지에 부합하는 면도 있다. 역진방지 규정으로 인하여 일단 개방을 한 후에는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고려하면, 개방 초기에 이러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합작투자기업이 외국 로펌의 자회사 내지 국내지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 1-7] 합작투자기업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동시 유지를 허용할 것인가?

외국 로펌이 합작투자기업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제1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 로펌으로 하여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합작투자기업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만 국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입법시 고려되어야 한다.

합작투자기업 설립에 참여한 외국 로펌은 합작투자기업에 배치한 자기 소속의 외국변호사를 통하여 자국법 등 허용된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와 별도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유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하나의 외국 로펌이 합작투자기업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동시에 유지한다면 양자 사이에

4) Legal Profession (International Services) Rules 2000.

5)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의 예에 따라 위원회는 이를 49%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업무가 직간접적으로 공유되고 혼동될 위험이 있어 각 형태에 적용되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소속의 외국법자문사가 합작투자기업의 국내법 사무에 관여한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합작투자기업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간 수익배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일정 업무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합작법률회사를 구성하는 싱가포르 로펌은 싱가포르 로펌 고유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나, 외국 로펌은 합작투자기업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⁶⁾

한편, 외국 로펌은 합작투자기업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는 자신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한미 FTA 부속서 II 제3항, 즉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라는 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도 자체의 폐기가 아니라 제1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제3단계 개방에 따른 합작투자기업 중 선택을 보장되 양자의 겸영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1단계 개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FTA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위원회는 **외국 로펌의 본점사무소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외국 로펌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쟁점 1-8] 동일 로펌에 의한 복수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할 것인가?

하나의 외국 로펌이 복수의 국내 로펌과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는 하나의 합작투자기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인지 검

6) Legal Profession Act 2000 130B (8).

토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국내 로펌이 복수의 외국 로펌과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문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로펌이 복수의 합작투자기업에 관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A라는 외국 로펌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국내 B로펌과, 조세분야에서는 국내 C로펌과 합작하는 식의 전문성에 따른 다양화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A라는 국내 로펌이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외국 B로펌과, 북미와 관련하여서는 외국 C로펌과 각각 합작하는 식의 지역전문성에 따른 다양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로펌이 여러 개의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한다면 법률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복수의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할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1개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쟁점 1-9] 합작투자기업의 명칭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법률시장 개방의 취지가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데 있다고 본다면, 합작회사를 구성하는 로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의미에서 합작투자기업의 명칭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4년 특정공동사업제도 도입시부터 사무소 명칭에 소속 외국 로펌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였다.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외국 로펌의 건전성 확보(외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로펌이 국내에서 이를 감추고 영업하는 행위 제한 등)을 위해서는 외국 로펌의 명칭 부기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싱가포르처럼 이를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⁷⁾

이에 위원회는 (i) 합작법무법인은 **합작참여자의 명칭을 병기**하고, (ii) 그 명칭 중에

7) Common Conditions Imposed On All Joint Law Venture Licenses의 “Structure of JLV” 제1항은 “The name of the JLV and its letterhead and logo should reflect its JLV status and contain the name of the SLF and that of the FLF.”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며, (iii)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쟁점 1-10]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 지분 인수를 통한 합작투자기업화를 허용할 것인가?

외국 로펌이 기존 국내 로펌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국내 로펌을 합작투자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허용할지도 문제된다. 이는 [쟁점 1-2]와도 관련된다. 유보안/양허안은 명백하게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사이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 지분 인수에 의한 합작투자기업화를 허용한다면,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의 합작주체는 외국 로펌과 국내 변호사(자연인)들이 되는데, 이는 투자협정의 문언과도 다를뿐더러, 합작주체의 일방은 로펌이고 타방은 자연인인 것도 규제의 형평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유보안/양허안에 따른 합작투자기업은 한국 측이든 외국 측이든 개인 변호사들이 주주 또는 구성원이 되는 기업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외국 로펌이 기존 국내 로펌의 구성원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인수하여 국내 로펌을 합작투자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허용할 협정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쟁점 1-2]에서 로펌 간의 합작만을 허용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쟁점 1-10]에서 제기한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쟁점 1-11] 합작투자기업 설립 후 이에 참여한 국내 로펌의 존속을 강제할 것인가?

합작투자기업 설립 후 합작참여 국내 로펌이 계속 존속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합작투자기업 설립 후 이에 참여한 외국 로펌은 존속하는 상태에서 국내 로펌이 해산한다면, 사실상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을 흡수합병하거나 자회사로 만드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 대 로펌의 결합을 통해 선진법률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자는 개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작투자기업 설립 후에도 국내 로펌이 존속할 수 있음은 물론 존속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합작투자자의 일방인 국내 로펌이 존속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합작투자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합작투자기업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둔다면, 국내 로펌을 존속시킬 현실적인 수요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합작투자기업의 송무나 형사변호 업무를 제한한다면, 합작투자기업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하되 이로부터 파생된 송무나 형사업무는 합작참여자인 국내 로펌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한 국내 로펌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만약 합작참여 국내 로펌이 해산 등으로 소멸한다면 3개월 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도록 하고 이를 보충하지 못할 경우 설립인가 취소사유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Ⅲ 합작투자기업의 운영 관련

[쟁점 2-1] 의사결정의 방식(머릿수 다수결 vs. 출자지분 다수결 등)과 정족수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것인가? 특히 이를 통해 합작주체인 국내 로펌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할 것인가?

앞서 [쟁점 1-6]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한 국내 로펌이 사실상 명의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합작투자기업이 사실상 외국 로펌의 자회사나 현지법인과 같이 운영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로펌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예컨대 지분율, 파트너 수 등에 있어 외국 로펌의 몫에 상한을 두는 입법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설립시의 지분율 제한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사결정 역시 원칙적으로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합작투자기업의 의사결정은 본질적으로는 당사자들 간의 약정과 그것을 구체화한 정관에 따라야 하므로, 입법에 의한 개입은 지분율을 무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쟁점 2-2] 합작주체의 변경, 교체, 탈퇴 등을 허용할 것인가? 특히 특정 합작주체의 결격 또는 탈퇴시 해산시킬 것인가, 일정 시일 내에 보충을 허용할 것인가?

합작주체가 변경될 경우 합작투자기업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보아 합작주체의 결격 또는 탈퇴를 합작투자기업의 해산사유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합작투자기업의 계속성에 지나치게 큰 위험요소가 되고 법률소비자의 이익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를 자동해산사유로 하기 보다는 이를테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여 그 동안 새로운 합작참여자를 구하여 새로 정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으면 합작투자기업이 계속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합작지분의 양도 기타 처분을 자유로이 허용할 경우에는 합작 당시의 취지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합작지분을 양도하려면 합작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여야 할 것이고, 양수인은 합작참여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것이다.

[쟁점 2-3] 합작투자기업에 속한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들의 직무구분(파트너 vs. 어쏘시트)을 정할 것인가, 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구성원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의 지분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

로, 로펌끼리의 합작투자기업에는 엄밀한 의미의 구성원변호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엄연히 해당 합작투자기업에는 이른바 파트너라고 불리는 중견급 변호사들이 있고 이들은 단순한 소속변호사와는 다른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들을 예컨대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등으로 지칭하고 정관에서 그 권한과 의무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작투자기업에는 반드시 일정수 이상의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를 갖추도록 하면 그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위원회는 합작법무법인 내에 **각 2인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일정한 경력 요건을 갖추고 합작참여자의 구성원(파트너)일 것을 요한다. 앞서 [쟁점 1-6]에서 언급하였듯이 합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외국법자문사 수는 선임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쟁점 2-4] 합작투자기업의 사무범위에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 특히 합작투자기업에 속한 국내변호사의 업무 범위도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것인가?

(1) 이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합작투자기업 및 그에 속하는 국내변호사의 사무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 FTA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입법목적상 바람직한지의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먼저 사무범위 제한이 허용되는지를 본다. 유보안/양허안에서는 외국변호사 또는 외국 로펌이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대한민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대한민국 내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유보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도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입법으로 합작투자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

는 것은 물론 합작투자기업에 고용되는 국내변호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협정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⁸⁾ 예컨대 합작투자기업 및 그 소속 국내변호사의 소송대리 내지 형사변호를 금지한다거나 그밖에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FTA 유보안/양허안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이다.

(3) FTA상 그러한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과연 정책적으로 그러한 제한을 둘 것인가, 둔다면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국내 로펌 및 국내변호사들을 법률시장 개방의 급격한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송무, 형사 등 일정 영역에 합작투자기업의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대리 등 국내 로펌들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합작투자기업이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면, 합작투자기업으로부터 외국 로펌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3단계 개방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이나 지분에 있어 국내 로펌의 주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그에 더하여 합작투자기업의 업무범위를 다른 국내 로펌보다 심각하게 제약할 정당한 근거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할만하다. 싱가포르는 2000년에 JLV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싱가포르 로펌 및 외국 로펌이 참여하는 JLV가 수행할 수 있는 싱가포르법 사무를 은행, 금융, 기업법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2008년 개정으로 JLV가 수행할 수 있는 싱가포르법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송무, 헌법/행정법, 형법, 부동산법, 가족법 관련 사무는 여전히 JLV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2008년 개정으로 JLV에 참여하지 않은 외국 로펌도 싱가포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외국 로펌에 고용된 싱가포르 변호사 역시 송무 및

8) 예를 들어, 합작투자기업에 취업한 국내변호사에 대해서는 국내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금지한다거나, 금융 등 일정 범위의 국내법사무에 대해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용훈, "한미FTA 법률서비스 개방 분야 타결 내용에 관한 연구", 법조 제615호 (2007.12), 36-37면).

헌법/행정법, 형법, 부동산법, 가족법 관련 사무는 수행할 수 없다. 이는 2012년 개정 법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을까? 싱가포르 정부가 Justice V K Rajah's Committee에 의뢰하여 작성한 Report of the Committee to Develop the Singapore Legal Sector, September, 2007과 싱가포르 법무부의 각종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싱가포르는 외국로펌/외국변호사가 싱가포르로 진출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상당히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싱가포르가 유인하기를 원하는 외국로펌은 자국에서 “General Practice”를 담당하는 로펌이 아니므로 싱가포르에 진출해서 “General Practice”에 관여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송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소재 외국 로펌 중에 송무분야에 관심을 표명한 곳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이점은 주로 기업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싱가포르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키기 위함인데, 송무, 형사, 헌법/행정법, 가족법, 부동산 등 싱가포르의 지역성이 두드러진 분야는 종래대로 국내 로펌이 수행하게 하면 족하고, 시장개방의 이점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것이 싱가포르 정책당국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5)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EU FTA 양허안의 개방제외 목록이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이 목록은 다음과 같다.

9) 2007 Report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7.54 There is no reason to allow FLFs to engage in any aspect of litigation, at least certainly not in the initial phase of liberalisation. This can perhaps be reviewed at an appropriate juncture when the impact of limited liberalisation can be better calibrated.

7.55 Internationally, general civil practice in areas such as criminal, property and family law have always been the domain of domestic law firms. In any event, most international firms do not engage in a domestic civil and criminal practice and are unlikely to be interested in competing with the small SLFs for this slice of the pie.

7.56 The Committee therefore recommends that the practice of criminal law, retail conveyancing, family law, and administrative law as well as all aspects of criminal and commercial litigation be ring-fenced.”

다음을 제외함.

- (i) 법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 (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 (iii)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 (iv)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위 목록은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개방하지 않기로 양자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합작투자기업의 업무범위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수미일관하다. 물론 위 목록에는 다소 부정확하거나 광범위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개방제외 목록에 명시된 사항을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을 통해 합작투자기업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킨다면, 치열한 협상을 통해 국제조약으로 양보한 것 이상을 국내법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6) 위와 같은 싱가포르의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EU FTA에 따른 명시적인 개방제외 항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개방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사법부를 직접 대하는 분야인 송무, 형사,登記, 가족법 등의 영역에서는 합작투자기업의 활동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위 **한-EU FTA의 개방제외 항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작투자기업이 (고용한 국내 변호사를 통해서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하더라도 해당 사무에 관해서는 합작참여 국내 로펌에서 별도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장애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쟁점 2-5] 합작투자기업의 과오책임 등에 대하여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특히 대표자, 담당변호사, 합작투자기업 그 자체, 각각의 합작주체 등의 책임은 어떠한가?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와 법무법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대표변호사는 물론 담당변호사도 그 업무에 관하여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 합작투자기업의 책임에 관하여도 일단 법무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국내변호사들에게 법무법인(유한)을 통해 유한책임을 지는 것을 허용한 것과 궤를 같이 하여 합작투자기업 역시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예컨대 합작법무법인(유한))로도 인정할 것인가? 외국 로펌에게 선택지를 늘려주고 더 우수한 외국 로펌 및 외국 변호사의 국내진출을 독려한다는 점에서는 유한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 합작주체들의 무한책임을 지더라도 합작주체 자체가 LLP, LLC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궁극적인 사원들은 결국 유한책임을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 (ii) 합작법무법인 자체의 자산규모는 비교적 적어서 채권자 보호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 (iii) 법률소비자들은 합작법무법인의 명칭에 등장하는 합작주체들을 실질적인 책임주체로 생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방 초기부터 무리하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합작투자기업 유형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합작법무법인만을 창설하고, 가칭 ‘합작법무법인(유한)’과 같이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합작투자기업 형태는 현 단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였다. 물론 ‘합작법무법인’이 실제로 설립 및 운영되는 과정에서 유한책임에 대한 합당한 수요가 제기되면, ‘합작법무법인(유한)’에 관한 추가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합작투자기업의 고용 관련

[쟁점 3-1] 국내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의 고용에 어떠한 제한을 둘 것인가? (최소 비율/수, 경력 등)

양허안은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때 “일정한 요건”으로 어떠한 사항을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앞서 지적한 대로 국내 변호사의 수나 경력이 미미하여 실질적 영향력이 너무 미약할 경우 합작투자기업이 사실상 외국 로펌의 국내지사 내지 자회사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합작을 통한 선진법률서비스의 도입이라는 개방 취지와 어울리지 아니한다. 둘째, 합작투자기업에 파견된 외국 변호사의 수나 경력이 지나치게 미미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합작투자기업이 사실상 외국 로펌의 국내 연락사무소처럼 운영될 수도 있다. 즉 국내에서는 마케팅과 수입만 하고 실제 업무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개방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작투자기업이 일정수 이상의 파트너급 국내 변호사와 파트너급 외국 변호사를 고용하도록 입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싱가포르의 예도 그러하다. 이에 위원회는 [쟁점 2-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2인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임 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일정한 경력 요건(5년 이상 법률사무 수행경력)을 갖추고 합작참여자의 구성원(파트너)일 것을 요한다.

[쟁점 3-2] 합작투자기업이 고용한 외국 변호사에게 반드시 외국법자문사 자격 및 등록을 요구할 것인가?

합작투자기업에 고용된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 업무를 수행하려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소속 외국변호사와 동일하게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로서 자격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한 외국변호사(이른바 비등록 외국변호사)가 합작투자기업의 근로자로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 등의 사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에 필요한 법률사무 수행경력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다(외국법자문사법 제4조 제1항 참조).

[쟁점 3-3] 외국 변호사의 국내 변호사에 대한 지시·감독·관여를 제한할 것인가?

합작투자기업 내에서 외국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 감독,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외국 변호사가 국내법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일본 변호사 고용을 허용한 이후에도 외국 변호사의 일본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① 외국법사무변호사가 자기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에 대해서 고용된 일본 변호사 또는 외국법사무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없고(외변법 제49조 제1항), ② 피고용자인 일본 변호사 또는 외국법사무변호사가 스스로 행한 법률사무가 고용주인 외국법사무변호사의 권한 밖의 일일 경우 외국법사무변호사는 이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도록 한다(외변법 제49조 제3항).

이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외국법자문사의 사무처리 범위 외의 사무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가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쟁점 3-4]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직과 합작주체의 파트너직의 겸직을 허용할 것인가?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직을 갖게 되면 합작주체의 파트너직을 자동상실하도록, 즉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직과 합작주체의 파트너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을지 문제된다. 겸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합작투자기업의 외관을 내걸고 실제 업무는 합작주체인 외국 로펌에서 수행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외국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파트너로 있는 합작투자기업에서 수임한 사건을 자기가 파트너로 있는 외국 로펌에서 사실상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겸직을 불허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합작투자기업에 어느 정도 경력과 실력을 갖춘 파트너급의 외국변호사가 파견되어야 개방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데, 본국 로펌에서의 파트너직을 사직하라고 하면 우수한 인력이 합작투자기업으로 올 유인이 없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겸직을 금지하는 입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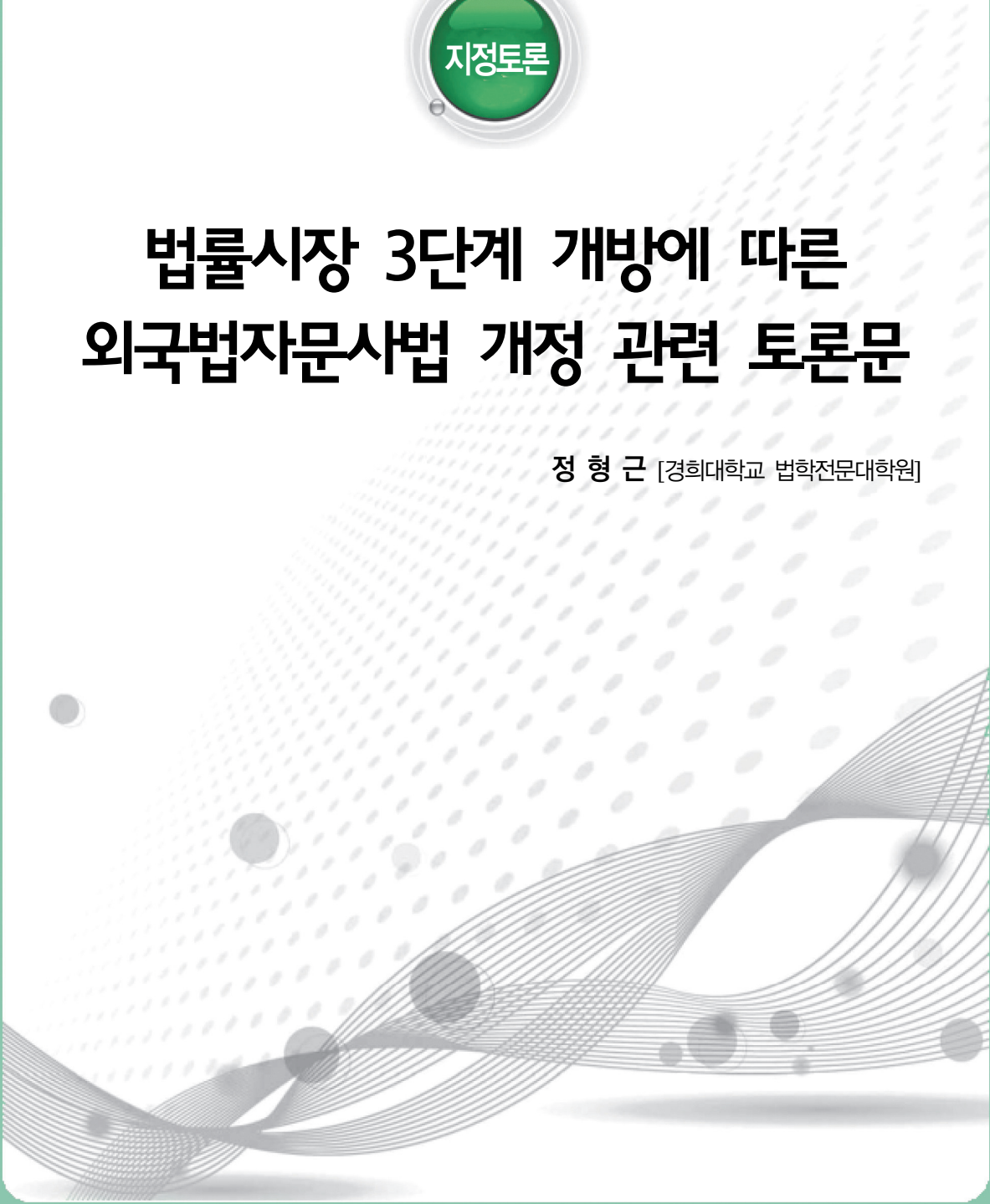
이에 위원회는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참여자 구성원(파트너)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정토론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정 형 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정 형 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좋은 주제발표를 하여 주신 천정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제발표의 목차에 따라 저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합작투자기업의 법적 성격 - 상인성 인정여부

합작투자기업에서 ‘기업’은 계속적 의도하에 영리행위를 실현하는 독립된 경제단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합작투자기업으로 장차 설립될 ‘합작법무법인(안)’이 기업의 형태를 갖는다면 상행위를 하는 상인에 해당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변호사법과 현행 판례는 변호사의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국내 로펌이 외국로펌과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변호사법에서 인정된 법무법인과 같은 로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논의될 여지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로 설립된다면 기존의 변호사법과 다른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로펌이라고 지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 조직형태(쟁점 1-4), 과오책임 등(쟁점 2-5)

가. 조직형태

합작투자기업의 조직형태는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과 같은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합작투자기업에 참가하는 국내 로펌의 조직형태를 따르는 것이 규율의 편의성을 가질 수 있으며, 독자적인 법인체로서의 대외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과오책임 등

개정안에서는 ‘합작법무법인’ 명칭으로 창설하면서 구성원은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성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법무법인 형식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합작법무법인을 현행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법무법인 형식이라면, 그 대표적인 특징은 구성원의 무한·연대책임과 의사결정의 전원일치의 결의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현행 변호사법과 같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합작법무법인을 창설한다고 한다.

합명회사의 책임관계는 ① 회사의 대표사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대표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210조), ②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을 때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2조). ③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213조).

이와 같은 상법상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법인의 책임관계, 특히 연대책임과 신입구성원 변호사의 채무인수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자본금을 대폭 인하하는 등으로 유한책임제도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합작투자기업은 합작의 주체인 외국로펌과 국내로펌 구성원 사이에는 어떤 인적유대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연대·무한책임제도를 취하는 합작투자기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기업 조직의 활성화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중대한 손해 발생으로 더 이상 조직유지가 어렵게 되어 외국로펌 구성원들이 출국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결국 국내 로펌 구성원들이 떠안게 될 위험도 있다.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구성원의 무한책임 보다는 그 법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과 같이 외국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창설한다면 외국 로펌의 본점과는 독립한 법인격이 될 것인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합작법무법인으로만 업무수행 중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 설립될 조직체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으로는 **합작투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해를 야기한 업무를 한 변호사와 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조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나라 변호사끼리 조직한 법무법인도 그 책임의 엄격성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도모하는 실정이다. 외국로펌과 합작하면서 무한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두터운 피해자 보호 측면도 있지만 **합작투자기업 설립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3 설립요건(쟁점 1-5)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요건은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하는 국내로펌의 설립요건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 외국 로펌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이 좌우되고 국내 로펌은 명의만 대여할 수 있다. 오로지 합

작투자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내 로펌을 급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전에 설립”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해 온 것과 같은 최소한의 경력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4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들의 직무 구분(쟁점 2-3)

합작투자기업의 업무를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가 담당변호사가 되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담당변호사 중에는 국내 로펌의 선임변호사와 외국 로펌의 선임외국법자문사가 반드시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으로 업무의 처리한다면 실질적인 협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작업무의 처리를 오로지 외국법자문사들만이 처리한다면 국내 로펌은 명의만 대여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합작투자기업에 속한 국내변호사의 업무 범위(쟁점 2-4)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한 국내 로펌의 기존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종래의 송무업무 등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송무업무’는 국내 로펌이 독자적으로 수임한 사건은 물론 합작업무의 취급 중에 발생한 송무사건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합작투자기업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 송무 업무는 국내 로펌 명의로 계산으로 해야 한다**. 합작투자기업의 외국 로펌에 고용된 국내 변호사가 송무사건의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합작투

자기업에 참여한 국내 로펌 변호사는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 수임명의와 계산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작투자기업이 국내 송무업무까지 맡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형사처벌을 하거나 직무정지 등과 같은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6 합작투자기업의 겸직허용(쟁점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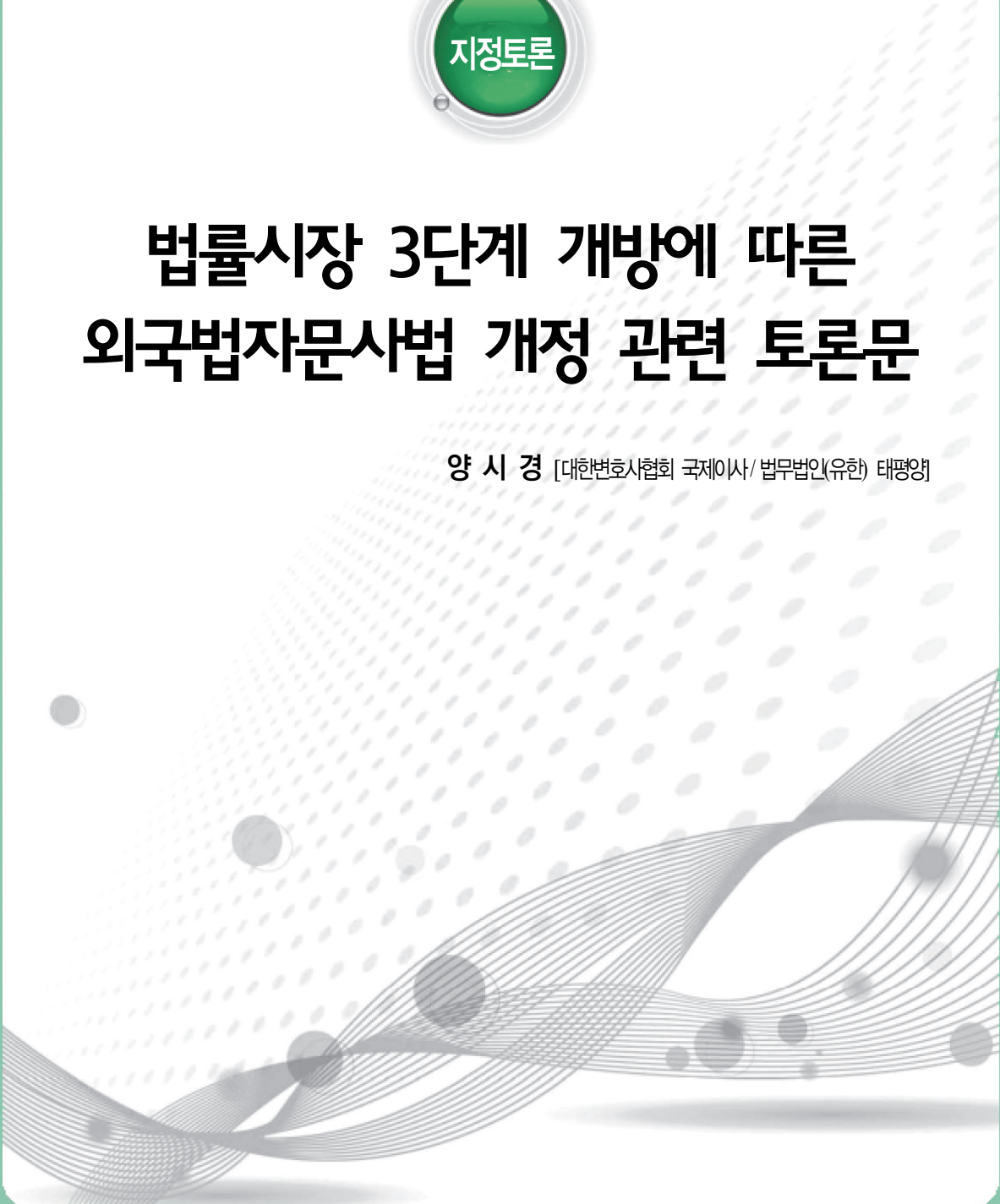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직과 합작주체의 파트너직의 겸직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에 동의한다. 반면,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한 국내 로펌의 변호사는 합작기업의 구성원 지위도 겸직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법상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겸직허가에 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겸직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합작투자기업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율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양 시 경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편

양 시 경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 합작의 주체(합작참여자)

가. 로펌 vs. 개인

- 합작의 주체(합작참여자)는 개인으로는 곤란하고 로펌이 되어야 한다.
- **FTA 문언** : “이 협정 발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미합중국/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실제적 문제** : 합작법무법인의 지분비율, 의결권비율, 수익배분방식 등을 정하는 데 로펌이 **설립주체라야**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개인이 합작주체로 될 경우에는 지분(equity)의 보유주체, 의결권 보유주체, 수익(이익배당) 귀속주체 등이 개인(nominee)인지 그 개인이 속한 로펌인지 개념적 혼란이 생긴다.

나. 국내 합작참여자 : 법인 vs. 조합(partnership)

- 국내 합작참여자는 변호사법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즉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3가지로 국한되어야 한다.

- 국내의 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는 권리능력이나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에 대해 합작참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 참고로 법무조합은 변호사법에 소송당사자능력이 명시되어 있고, 영미의 LLP 역시 partnership이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권리의무능력이 있다.
- 다만, 국내법상 법무법인은 무한책임을, 법무법인(유한)은 유한책임을 부담하지만, 합작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주주유한책임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그에 준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마련하게 하거나 보험을 통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설립인가요건으로 그 본점사무소의 이행보증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가 되어야 한다.

2 지분인수(buy-in) 방식 합작의 허용 여부

- 외국 합작참여자가 국내 로펌의 지분을 인수해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
-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의 지분인수를 통하여 합작투자기업을 만든다면 그 합작주체는 외국 로펌과 국내 변호사(개인)들이 되는데, 이는 로펌대 로펌간의 합작투자만을 인정한 FTA 유보안/양허안에 위반된다.
- 나아가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의 지분을 ‘전부’ 인수함으로써 국내 로펌이 해산·청산을 하게 되면 사실상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을 흡수합병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도 국내 로펌과의 합작투자기업 형태를 통해서만 시장진입을 허용한 FTA에 어긋난다.

3 합작법무법인 내 지분비율 및 의결권비율 제한

-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의결권비율도 그에 상응하도록 규율하며, 합작법무법인의 파트너급 외국법자문사(선임외국법자문사)의 수가 파트너급 변호사(선임변호사)의 수보다 많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외국 합작참여자의 과반수 지분보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의 우수 로펌들이 국내 중소형 로펌을 합작파트너로 삼아 다수지분을 갖고 사실상 합작법무법인을 외국 로펌의 자회사 내지 국내 지사처럼 운용할 소지가 있는데, 이는 FTA의 취지에 어긋난다.
- 다만, 위와 같은 지분규제는 향후 국내 법률시장에서 합작법무법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실제 합작법무법인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합작참여자간의 협의보다는 대부분 합작법무법인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변호사의 voice를 확보하려면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와 같은 내부조직을 강제하고, 그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선임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4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제한

- 합작법무법인의 사무범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FTA 유보안/양허안에 명시된 제한의 취지를 반영하되, 개별 영역 별로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한-EU FTA 양허안에 열거된 개방제외 항목들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주로 1~2단계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을 위주로 하는 외국 법자문사 내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달리, 합작법무법인은 FTA에 따른 3단계 개방에 따라 국내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3단계 초기의 일정 기간 이후로는 이러한 업무범위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삭제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 특히 개방이 이점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고 법원이나 정부기관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송무 및 대관업무 분야나 공증업무, 가족법 등과는 달리 노동 분야나 부동산 분야의 자문업무는 비교적 일상적인 기업법률자문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규제함으로써 파생될 불편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좀더 가까운 장래에 그 업무제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합작법무법인의 명칭

- 합작참여자의 명칭을 병기하되, 영문명칭과 국문명칭의 전부나 일부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운용이 필요해 보인다.
- 합작회사를 구성하는 로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합작참여자인 양쪽 로펌의 명칭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창립 변호사(founding partner)의 이름을 나열하는 식의 명칭을 써오고 있는 미국/유럽계 로펌들과 우리 국내 로펌들의 명칭이 병기될 경우, 영어와 한글 이름이 뒤섞여 어색하거나 또는 너무 긴 명칭이 되어 혼란스러울 소지가 있으므로, 예컨대 합작참여자인 양쪽 로펌의 다수 이름들 가운데 일부만을 조합하는 방식도 허용하는 등 운용 면에서 융통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circular logo with a green center and a silver border, containing the text '지정토론' (Designated Debate).

지정토론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회

이 원 조 [DLA Piper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 병 수 [Sheppard Mulli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발제문에 대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의 의견*

2015년 3월 10일

* 동 의견은 시간제약상 FLA의 다양한 의견들의 일부만을 발제한 것으로, 이외 추가 의견들을 추후에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평*

- 1단계 및 2단계 법률시장 개방 이후 외국 로펌의 주요 고객인 한국의 기업들은 법률시장 개방의 최대 수혜자로서 개방을 대환영하고 있음.
- 2015년 3월 현재 22개의 외국로펌이 개소한 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통하여 법률 서비스의 현저한 가격 저하를 가져옴.
- 외국로펌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 및 밀착된 서비스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킴.
- 로펌 선정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어 짐.
- 전세계 로펌들이 수집하는 각국의 최신 정보를 서울 사무소를 통해 쉽게 접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음.
- 한국은행 집계를 보더라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법률서비스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2014년, 2013년 대비 1억 5510만 달러 줄어 들었음. 이것은 법률 시장 개방의 결과라는 분석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아직까지 발표 되지 않았음. 따라서, 개정안을 검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본 의견서는 법률 시장 개방에 대한 FLA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논의의 편의상 권경훈 교수의 발제문에 정리된 주요 쟁점에 대한 FLA의 삼성 의견을 기술한 것임.



2

총평

- 발제안은 법률시장의 개방은 현실적으로는 국내 대형 로펌을 제외 한 대부분 (약92%)의 국내 변호사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과, 도리어, 한국변호사들의 더 많은 취업 기회의 창출 및 수입 기회의 증가가 될 수 있음을 고려 하지 않고 있음.
- FTA의 기본은 FTA 규정에 따른 개방을 추구 하는 것임 :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Korea shall allow US law firms to establish,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 "joint venture firms" 의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발제문은 무한책임 (unlimited liability)을 지는 "합작법무법인 " 만을 제시함.

* "Joint Venture" (ABA 2006, Model JVA with Commentary)- A relationship or organization of at least two persons or entities, with a common undertaking. A joint venture may take the form of:

- A contractual relationship not constituting a juridical entity
- A partnership (either general or limited)
- A limited liability company
- A corporation



3

총평

- 발제문의 일부 내용은 법률시장의 진정한 개방이나 국제화된 법률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임.
- 발제문의 일부 내용은 FTA 규정 및 정신에 합치되지 않은 비상업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음.
- 더구나, 합작 설립 후 기존의 FLCO를 없애야 한다면 외국로펌은 국내의 JV에서의 소수참여자로서 무한 책임만을 지는 등 불합리한 제약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현재의 사무실 형태로 남게 되어 시장개방은 이름뿐인 것에 그치는 결과가 될 것임.



4

합작주체

- 발제문의 JV 정의를 따른다 해도, 합작의 주체는 외국 로펌의 현지법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 글로벌 대형 로펌들로 하여금 49%이하의 지분을 갖는 JV를 통해 JV의 51% 이상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보유한 파트너로 인해야기 될 수도 있는 모든 경제적 법적 책임을 무한대로 져야 한다는 것은 상업적 및 법적 관점에서 비합리적임.
 - 외국로펌의 책임 문제는 변호사 전문 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임.
 - 외국 로펌들은 실제로 국내 로펌에 비해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액수의 변호사 전문보험을 들고 있으며, 한국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면허를 받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합작주체 및 지분율

- 업력 5년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발제문에 언급 된 최소한의 능력과 실체를 갖춘 국내 로펌에 우려는 덕망과 경륜을 갖춘 많은 한국변호사들로써 쉽게 해결 될 수 있음. 이를 막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취업선택의 자유에 저촉 된다고 보여 짐.
- 외국 로펌들이 국내 대형 로펌보다는 중소형 로펌을 합작 파트너로 선호 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해도, 그에 따른 지분제한은 논리성이 떨어짐.
-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의 예에 근거한 외국합작참여자의 49%의 지분 제한은 비합리적이며 FTA의 기본 정신에 부합 되지 않음.



6

합작주체 및 지분율

- 기간산업에 대한 지분규제는 그 것이 지닌 시장에 대한 독과점성격과 국민경제에 대한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근거 임. 법률서비스를 기간산업의 옛 개념에 비추어 보는 것은 무리임.
- 파트너급 외국법자문사의 수가 파트너급 국내변호사의 수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FTA의 기본정신에 부합 되지 못함. 이러한 내부구조 및 운영의 사안은 JV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는 것이 타당함.



7

업무범위 및 변호사 고용

- 업무범위의 제한은 개방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한-EU FTA에 명시되었던 개방제외 목록은 한-US FTA에는 제외되었음.
- 한 EU-FTA가 한 US-FTA 에 선행 되었고, 한-US FTA는 선행 사례로써 한 EU-FTA를 심사숙고 했음에도 개방제외목록을 제외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는 조약에 의한 법률 시장 개방이 아니라 자발적 개방의 결과이었음. 또한, 외국로펌에게 시장참여에 대한 여러가지 선택이 가능함. JV를 하지 않고도 싱가포르 변호사를 고용 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예를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조건하에서 JV를 통하지 않고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파트너급 국내변호사의 영입 및 국내변호사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함.



8

변호사 고용

- 2명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 외국법자문사 의무화는 비현실적임. 변호사 숫자는 JV의 필요와 상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외국법자문사의 직무경력요건을 경력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효율적 자문을 가능케 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하며 상업적으로도 합리적임.



9



지정토론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회

신 현 식 [법무법인 세종]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신 현 식 [법무법인 세종]

1 서론

먼저 천경훈 교수님의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발표를 들으면서 한·EU FTA와 한·미 FTA(이하 “FTA”)의 발표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고, 법률시장 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맞이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FTA상 문구에도 불구하고, 동 문구를 기초로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많은 쟁점들을 논리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이후 법률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다 보면 현재까지 상정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FTA의 기본정신이나 협정 문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시장의 행태와 관습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에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관할: Jurisdiction)의 법률서비스의 방식과 수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합의된 FTA를 수용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법 및 변호사법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 것인지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향후 논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법률시장 개방을 바라 볼 때 보완되어야 할 사항 위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쟁점별 검토사항

[쟁점 1-3] 로펌을 합작주체로 할 경우, 법인 형태의 로펌만을 합작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파트너십/조합 형태의 로펌도 합작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합작투자기업의 합작주체에 관하여, FTA상으로 “미합중국 또는 EU국가 내 법무회사(로펌)”이 합작주체이며, 해당 국가에서 허용되는 General Partnership, LLP, LLC, PC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 로펌들이 모두 합작주체가 될 수 있고, 국내의 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는 권리능력이나 소송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점 때문에 국내 합작주체로는 일단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만을 인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6쪽 참조).

그러나, 해외 로펌의 경우 비록 각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의 권리능력과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리 나라에서 합작투자기업의 투자주체로서 중국적인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무회사의 형태를 불문하고,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있거나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조합형태의 외국 법무회사의 경우 해외에서 해당 조합원인 개별 파트너가 조합채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지 등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법무회사는 합작투

자기기업의 합작주체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 지 의견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쟁점 1-4] 합작투자기업의 조직형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호사법상 인정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준하여 인정할 것인가, 새로운 유형의 조직형태를 창설할 것인가?

유보안에 따르면 합작투자기업이 반드시 법인격을 가진 법인 형태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단계 개방의 초기에는 지배구조, 운영, 수익분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하여 규제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합작투자기업에 대하여 당사자 간 계약 자치를 기본 운영원리로 하는 조합계약이 아니라 법인 형태를 요구하는 방안도 합리성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는 “합작법무법인”이라는 유형의 조직형태를 새로이 창설하고, 외국로펌과 한국로펌이 구성원(무한책임사원)으로서 참여하는 법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8쪽 참조).

기본적으로는 합작투자기업의 형태를 합작법무법인으로 새롭게 창설하고, 합작주체들이 무한 책임사원으로서 참여하는 법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합작법무법인의 조직형태는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법인의 형태로 구성되더라도 해당 구성원들이 책임이 제한되는 형태의 법무회사인 경우 궁극적으로는 법률수요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LLC와 법무법인(유한)이 합작주체가 된다면 비록 합작투자기업이 무한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로 인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에 대한 고려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안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법률서비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제한적인 지분비율에 따른 의결권 행사나 합작지분 양도제한(15쪽 참조)은

오히려 인적 결합을 강조하는 조합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합작주체가 법무법인이 됨으로써 합작투자기업의 종국적인 이익의 귀속은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세무적인 고려에 의할 때에 도 특수한 조합형태의 합작투자기업이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쟁점 1-5] 합작투자기업의 합작주체들에게 어떤 요건을 부과할 것인가?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을 합작주체로 하는 경우, 각각의 업력과 규모 등에 관하여 어떤 자격 제한을 둘 것인가?

이에 관하여 최소한의 능력과 실체를 갖추고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없는 외국 로펌들만이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하도록 규제하고, 국내 로펌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로펌에 대해서도, (i)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 (ii) 5년 이상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5인 이상 일 것 등 요건을 갖출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시장의 행위주체의 조직형태에 따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법상 합작투자기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내 법무회사는, (i) 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변호사와 그 중 1인 이상이 5년 이상의 법조경력 있는 변호사”(변호사법 제45조 참조)로, (ii)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와 그 중 2명 이상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있는 변호사”(변호사법 제58조의 6 참조)로, (iii)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와 그 중 2명 이상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있는 변호사”(제58조의 22참조)로 각각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경력과 구성원 수 요건을 요구한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특히 명목상으로만 합작투자기업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외국 로펌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하는 국내 로펌도 급조된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작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외국 로펌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이 합작주체로 참여하는지 보다는 법률시장에서 어떻게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하는 지가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 에서 외국 로펌의 경우에는 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신청 시 외국 로펌에게 요구하는 조건 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더라도, 적어도 국내 로펌에 대해서는 합작주체의 구성원 수와 경력 요건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쟁점 1-6】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합작주체의 의결권 또는 지분비율을 제한할 것인가?

위원회는, (i)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외국 합작주체의 지분을 제한하고, (ii)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급 외국법자문사의 수가 파트너급 변호사의 수보다 막을 수 없게 하고, (iii) 의결권 행사는 합작주체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하도록 하는 등 입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 변호사의 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점이 있습니다. 즉, 합작투자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법률업무의 범위는 한EU FTA에서의 제한사항을 받아 들이면 서 국내법 관련 사무는 외국 로펌에서 온 파트너급 외국법자문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 로 한다면, 합작투자기업이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이나 섭외사건을 다수 처리하고자 하 나, 국내법 관련 업무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내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의 실질적 수요보다 외 국 로펌의 파트너급 외국법자문사의 수요가 막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국내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의 숫자를 비례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로펌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 로펌보다 적은 수의 파트너급 변호사가 소속

되어 있는 경우가 막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작투자기업의 비효율적인 국내법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불필요한 다수의 파트너급 변호사를 합작투자기업에서 국내법 관련 업무 수행에 배정하게 된다면, 국내 로펌 자체가 실제 국내법 관련 업무를 수행할 파트너들의 수가 불충분하여, 업무수준이 저하되거나 업무역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의 책임과 권한이 국내 로펌의 그것과는 실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예를 들어, 이익분배권이나 의결권은 없음), 어차피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은 지분비율에 비례하도록 하고, 지분비율은 외국 로펌에 대해 잠정적으로 49%의 제한을 부과하게 된다면, 국내 로펌에서 파견되는 파트너급 변호사의 수가 외국 로펌에서 파견되는 파트너급 외국법자문사의 수보다 반드시 막도록 요구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굳이 이러한 관점에서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파트너급 변호사 당 합작투자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국내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의 수를 상당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파트너급 외국법자문사의 국내법 관련 업무에 대한 사실상 업무지시와 감독을 실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합작투자기업 파트너의 수는 합작투자기업의 이익의 배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외국 로펌의 합작투자기업 지분비율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익분배율이 결정되는 구조 하에서 외국 로펌이 합작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합작투자기업에 근무시켜 외국 로펌이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 등 인건비를 합작투자기업에 전가시킴으로써 외국 로펌의 실질적인 이익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 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더라도 지분불비례적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형태의 입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쟁점 1-8] 동일 로펌에 의한 복수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하나의 로펌이 여러 개의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한다면 법률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과 그 수요의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합작투자기업은 1개 이상 의 국내 합작주체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주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1개 합작주체는 2개 이 상의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3단계 개방의 방향을 국내 법률시장에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법률서비스 산업 자체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국내 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1개 합작주체가 2개 이상의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분야별 합작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법률시장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러한 제안에 따라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이 몇 개로 줄어들게 되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2-1] 의사결정의 방식(머릿수 다수결 vs. 출자지분 다수결 등)과 정족수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것인가? 특히 이를 통해 합작주체인 국내 로펌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할 것인가?

위원회는 국내 로펌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분율과 파트너 수 등에 있어 외국로펌의 몫에 상한을 두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의 경우에는 국내 로펌의 영향력과 직접적인 연결점이 될 수 있지만, 파트너 수는 합작투자법인의 파트너가 합작투자법인의 의사를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쟁점 2-2] 합작주체의 변경, 교체, 탈퇴 등을 허용할 것인가? 특히 특정 합작주체의 결격 또는 탈퇴시 해산시킬 것인가, 일정 시일 내에 보충을 허용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3개월 정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동안 새로운 합작주체를 구하여 새로 정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으면 합작투자기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합작지분의 양도를 위해서도 합작주체 정원의 동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작투자기업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작투자기업은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합작투자기업 명의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되, 업무담당 변호사 또는 외국 법자문사를 지정하여 동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하여금 관련 법률업무를 주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작주체의 변경이 있더라도 합작투자기업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법률서비스 제공의 주체에는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작주체의 변경에 따라 업무담당 변호사가 변경되는 실질적으로 합작주체의 변경에 따른 보충기간 등 절차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합작주체의 변경에 따른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해충돌 회피의 원칙을 마련하며, 법률수요자 측면에서 지속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 및 기존 수행 하던 법률서비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충돌 회피의 원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합작투자기업이 법무업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합작주체가 동 법무업무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내재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국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소 넓은 이해충돌 확인 및 회피를 위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쟁점 2-3] 합작투자기업의 사무범위에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 특히 합작투자기업에 속한 국내 변호사의 업무범위도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것인가?

위원회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합작투자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과 합작투자기업에 고용되는 국내변호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합작투자기업 및 그 소속 국내변호사의 소송대리 내지 형사변호를 금지한다거나 그밖에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관련 법령상 JLV와 외국 로펌, 외국 로펌에 고용된 싱가포르 변호사의 업무제한을 참고 삼아, 한미FTA 또는 한EU FTA상 규정을 기초로 송무, 형사, 등기, 가족법, 등의 영역에서 합작투자기업의 활동을 배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한EU FTA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를 제외 업무에 규정하는 있는 것처럼 그 의미가 너무 넓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쟁점 2-5] 합작투자기업의 과오책임 등에 대하여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특히 대표자, 담당변호사, 합작투자기업 그 자체, 각각의 합작주체 등의 책임은 어떠한가?

합작투자기업의 책임형태와 관련하여, (i) 합작주체들의 무한책임은 합작주체의 형태에 따라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 (ii) 법률소비자들이 합작주체들을 실질적인 책임주체로 생각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작투자기업에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만 인정하기로 한 위원회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합작투자기업의 형태의 제한적인 허용을 통해 합작주체들의 무한 책임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산 또는 담보가 확보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법인(유한)의 의무가입사항인 책임보험의 가입을 합작투자기업에 강제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법률수요자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쟁점 3-1] 국내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의 고용에 어떠한 제한을 둘 것인가? (최소비용/수, 경력 등)

이에 관하여 위원회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일정한 경력 요건을 갖추고 합작주체의 구성원일 것을 요구하며, 각 2인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로펌의 현실적인 합작투자기업 운영 지배를 막기 위해서는 고용 가능한 국내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숫자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쟁점 3-2] 합작투자기업이 고용한 외국 변호사에게 반드시 외국법자문사 자격 및 등록을 요구할 것인가?

이는 합작투자기업의 업무범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합작투자기업이 외국법 관련 사무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내법에 관련된 사무를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고객의 국내법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 로펌에서의 업무수행과 유사한 형태로 외국변호사의 업무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는 외국법에 관한 자문을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국내 법 또는 외국법에 관련된 자문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합작투자기업 소속 파트너급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가 원칙에 따른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쟁점 3-4]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직과 합작주체의 파트너직의 겸직을 허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합작투자기업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주체 구성원(파트너)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국내 로펌의 파트너 또는 해외 로펌의 파트너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합작투자기업 내에서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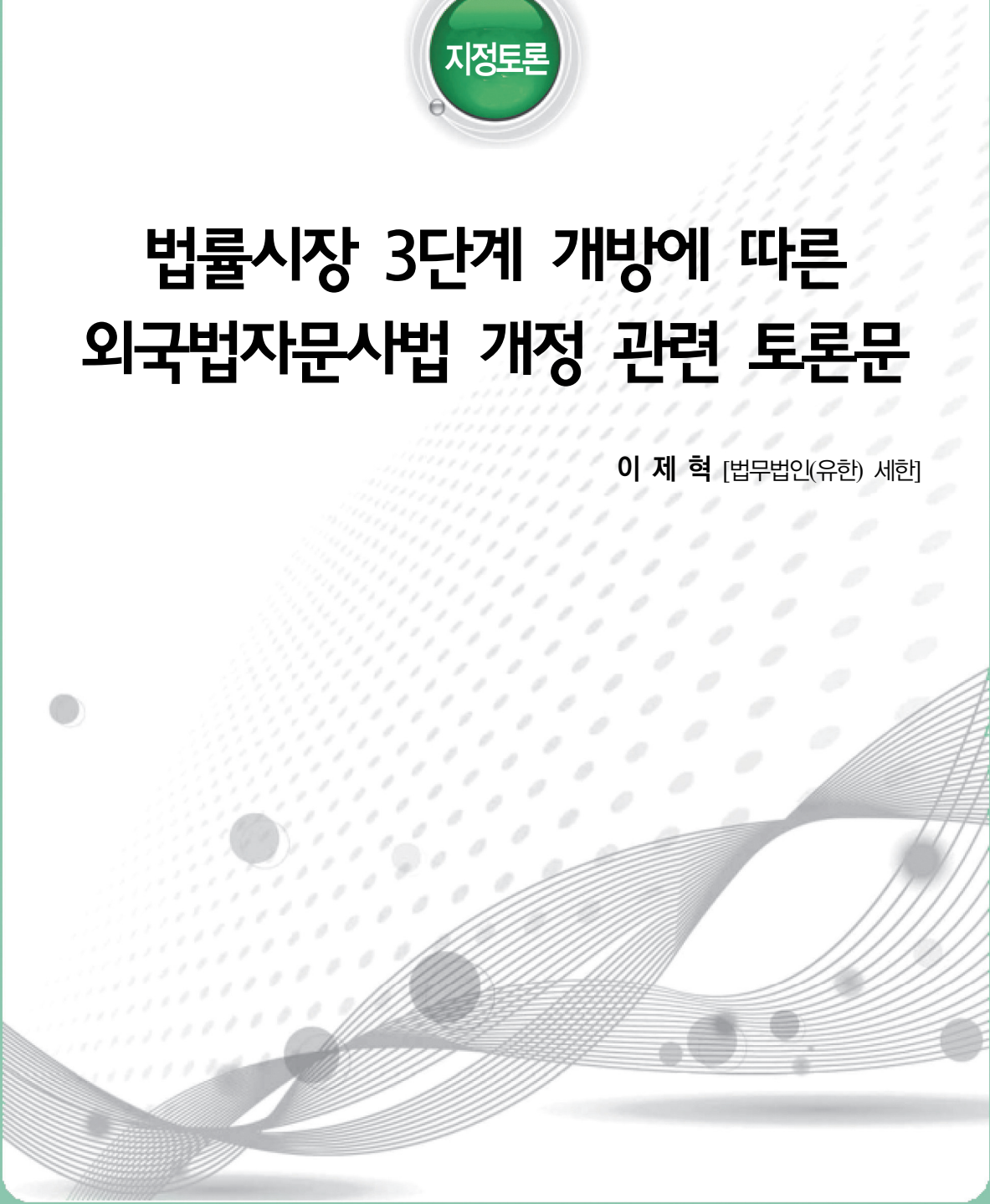
리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제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합작투자기업의 업무범위 제한을 형해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직과 합작주체의 파트너직을 겸직하더라도 합작투자기업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합작주체인 로펌의 파트너로서 수행할 수는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정토론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회

이 제 혁 [법무법인(유한) 세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이 제 혁 [법무법인(유한) 제한]

쟁점 1-5 합작투자기업의 합작주체들에게 어떤 요건을 부과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국내로펌도 급조된 곳이 아니라 최소한의 능력과 실체를 갖추고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없는 곳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설립요건 중 5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시행초기라는 점에 비추어 조금 과도한 기간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3년 정도로 낮춘 뒤, 순차적으로 5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음

쟁점 1-6 합작투자기업의 명칭과 관련하여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서 존속하는 국내로펌의 명칭에 대하여는 예외를 규정하여야 할 것임

쟁점 2-4 합작투자기업의 사무범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외국로펌의 대부분은 소위 아웃바운드 즉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처리하는 국제거래업무,涉外 사건 내지 자문업무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

지고 국내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보여지고, 능력있는 국내변호사를 고용하여 고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국내 송무업무까지 수행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의 사무범위 제한에 관한 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와 같은 합작투자기업의 사무범위에 대한 제한은 기존에 설립된 외국로펌의 사무소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합작투자기업 방식이 아닌 개별 한국변호사의 고용 내지는 기존 국내로펌에서의 일괄퇴사 후 외국로펌 국내사무소에 입사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합작투자기업을 설립 내지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쟁점 3-4 파트너직 겸직의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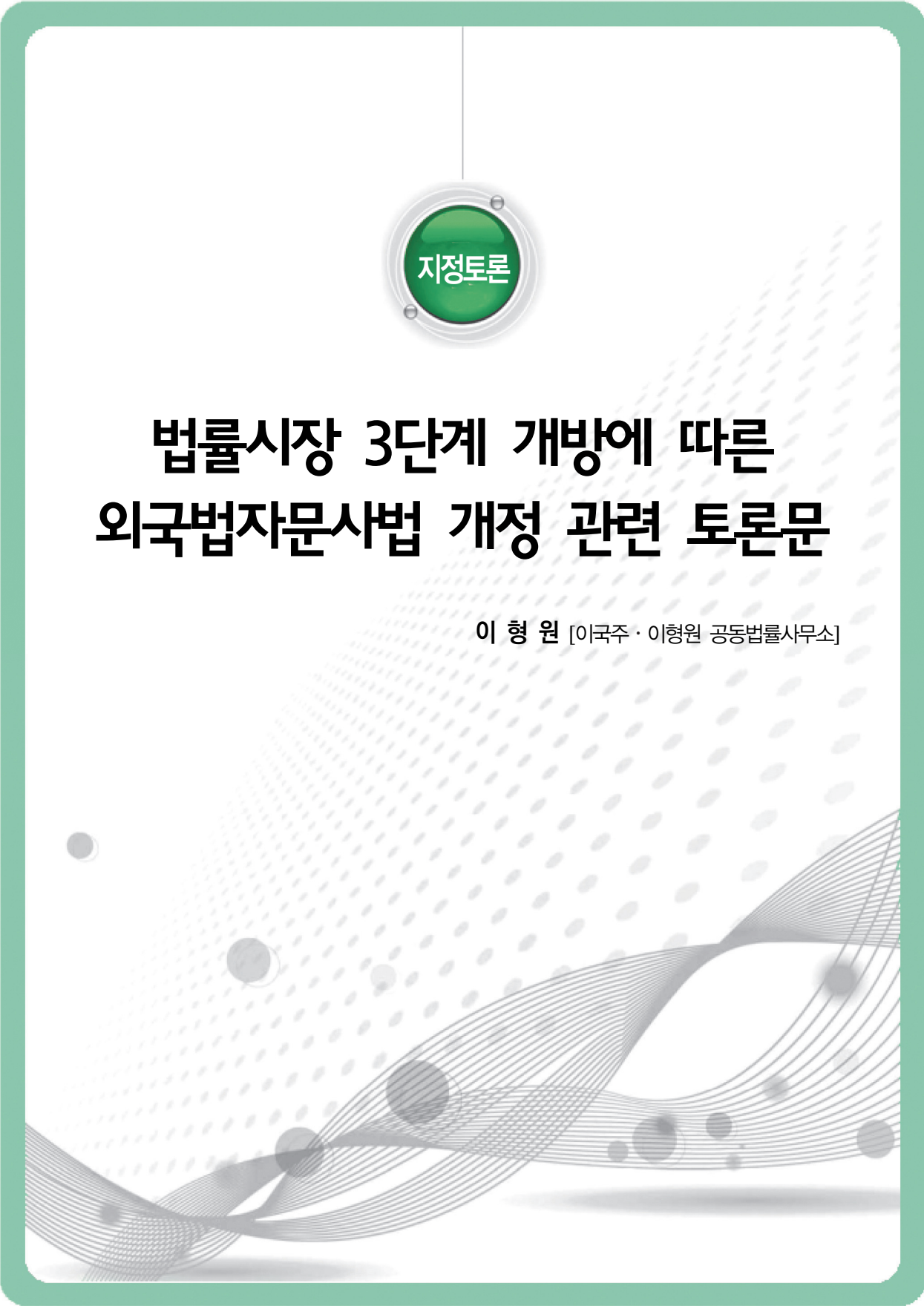
겸직을 허용할 경우의 문제점과 허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은 모두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에 해당되나, 겸직을 불허할 경우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를 담당하게 될 한국변호사의 업무범위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합작투자기업을 설립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겸직을 허용하되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겸직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지정토론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회

이 형 원 [이국주 · 이형원 공동법률사무소]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이 형 원 [이국주 · 이형원 공동법률사무소]

1. 법률시장 3단계 개방과 관련한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개인 변호사들의 경우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위의 의견들을 수집한 결과 크게 세가지 부류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첫째, 외국법자문사법개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나 의견이 없는 경우입니다.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이 개인변호사들의 업무에 미칠 영향이 막연함을 이유로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되더라도 송무위주의 개인변호사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 둘째, 국내 법률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합작 투자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견해는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이 직접적으로 개인변호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법률시장개방으로 인해 결국에는 개인 변호사들의 송무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셋째, 국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경우 합작투자기업의 설립 및 운영, 국내변호사 고용에 있어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자는 입장입니다. 법률시장

개방의 취지를 살려 합작투자기업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국내변호사들이 외국로펌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자는 견해입니다.

5.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인변호사들의 경우 합작투자기업의 설립 및 운영방안 (지분비율 등)이나 합작투자기업의 국내변호사 고용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다소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견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개인변호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소 불확실하다는 점과 법률시장 3단계 개방과 관련한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법률 전문지나 언론을 통해 크게 이슈화되지 않아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의 두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이상의 입장들을 토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작투자기업의 설립 및 운영, 국내변호사 고용에 과도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시장개방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많은 수의 청년 변호사들이 국제무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업무를 하겠다는 꿈을 품고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상당수의 변호사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이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의 합작투자기업에서 일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무대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제업무에 관심이 있는 국내변호사들 개개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합작투자기업의 설립 및 운영, 국내변호사 고용에 있어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변호사 개개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결국 국내로펌의 국제경쟁력 강화로도 연결될 것이며,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의 활발한 교류

와 협력 그리고 경쟁은 결국에는 국내로펌의 시스템과 서비스의 향상, 소속 변호사들의 처우개선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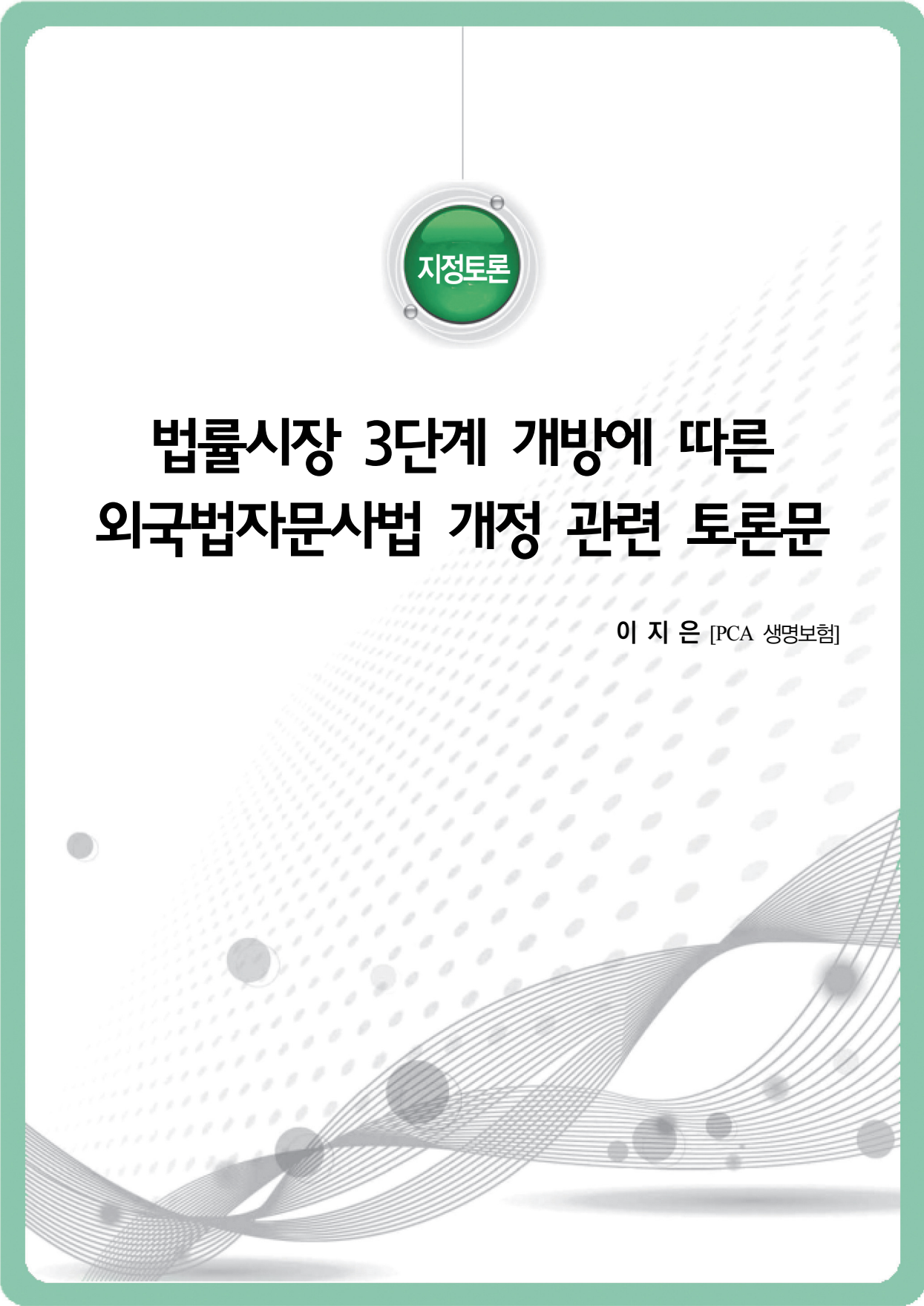
7. 다만 위와같은 기본적 전제아래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부작용들을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시장 1,2단계 개방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부작용, 또 앞으로 예측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연구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외국법자문사법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문을 열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3단계 개방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합작투자기업 운영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법자문사들이 국내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정토론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이 지 은 [PCA 생명보험]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관련 토론문

이 지 은 [PCA 생명보험]

- 1-1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것으로 보임
- 1-2 자연인이 아닌 로펌이 합작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 1-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형태를 합작주체로 인정하되, 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도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동의함
- 1-4 합작법인의 조직형태에 대해 위원회가 채택한 “합작법무법인”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각 구성원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이기 때문에 위 합작법무법인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conflict check을 해야 하는지 및 confidential obligation, malpractice의 경우 책임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 것이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비교입법연구나 세부요건 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1-5 합작주체에 대한 요건 및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없고, 일정 규모 및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합작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설립주체 제한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경우 업무 경력은 충분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신생 로펌들이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재화나 서비

스를 공급하는 기업과는 달리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이 법률서비스 차별화의 가장 본질적 요소이고, 새로 개업한 전관의 경우 변호사 경력 자체는 짧을 수 밖에 없으므로, 법조 경력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법무법인 운영경력을 합작주체 적격의 본질적 요건으로 보는 경우,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경력보다는 합작주체가 되는 법무법인의 구성 변호사 경력을 중심으로 자격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1-6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지분권제한의 경우, 역진방지에 대한 우려로 Singapore 모델을 따라 국내법인의 과반수 지분 확보안을 제안하였는데, 외국 로펌의 합작기업 설립이나 합작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요인이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합작법무법인의 운영방식 등에서 법률시장개방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국제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감소된다는 단점도 있음
- 1-7 합작투자기업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동시유지를 불허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이러한 경우 합작투자기업설립이나 추가 투자요인 감소의 우려가 있음
- 1-8 동일 로펌에 의한 복수합작투자기업 설립 불허 근거로 법률소비자의 혼동우려가 있다는데 동의함
- 1-9 합작투자기업의 합작참여자의 명칭 병기 및 합작투자기업 명시 등을 통한 명칭 제한에 동의함
- 1-10 합작투자기업의 참여 국내법무법인의 존속 강제는 합작투자기업의 실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임
- 2-1 합작투자기업 의사결정방식은 각 합작기업의 정관이나 설립시 합작계약 등에 명시하여 결정하면 족할 것으로 보임

- 2-2 합작주체의 변경, 교체, 탈퇴 등의 경우 자동해산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합작주체를 다시 찾아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지분양도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2-3 합작투자기업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구분의 경우,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으로 수익배분자격을 가지는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를 일정 비율로 두어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2-4 합작투자기업의 업무제한과 관련, EU FTA에서 유보한 업무범위에 대해 합작법무법인에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보된 영역은 사법부와 직접 관련되고 국내법을 위주로 하는 분야로 국내법률소비자가 법률서비스의 국제화로 인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야로 보이지 않아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보임
- 2-5 합작투자기업의 과오책임으로 인한 책임주체와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소비자 보호 및 신뢰보장 측면에서는 합작투자기업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3-1 합작투자기업의 국내 및 외국변호사고용관련, 국내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일정 수의 파트너 급 국내변호사 및 외국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음
- 3-2 합작투자기업에 고용된 외국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등록 여부와 관련, 등록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존 국내 로펌에서 활동 중인 미등록 외국자격변호사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한국 내 법률사무수행을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도록하고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봄. 이에 부연하여,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자격 사내변호사의 경우 역시, 원자격국 자격취득여부를 검증할 장치도 없으며, 외국법자문사로도 등록되지 않고 변호사라는 명칭을 쓰면서 외국법 자문업무 혹은 국내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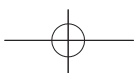
률서비스의 전문성 및 신뢰를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미등록 외국변호사들의 재직현황을 파악하고,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통한 실효적 감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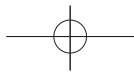
3-3 합작법무법인 내의 외국변호사의 국내변호사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외국변호사의 국내법자문업무 허용결과가 되므로, 이를 제한하는 일본의 예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동의함

3-4 합작투자기업 및 합작주체의 파트너 겸직이 허용 여부에 대해 종합적 고려로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파트너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절충한 것은 바람직하나, 한편 conflict check 등에 있어 혼돈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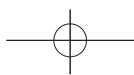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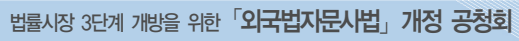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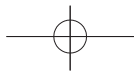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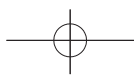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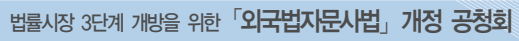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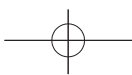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2015년 3월 10일 인쇄

2015년 3월 10일 발행

- 발 행 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 대표전화 (02)2110-3661
- 인 쇄 처 동광문화사 (02)503-5165